

■ 신년기획

2025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회고

홍 복 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目 次> —

I. 머리말	1. 사건개요
II. 주주권 유보부 주식양도예약에 있어 실질 주주명부의 효력과 신주발행의 효력(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 판결)	2. 대법원 판결요지
1. 사건개요	3. 해 설
2. 대법원 판결요지	V. 공동상속 주식의 준공유 관계와 주주지위 확인의 소(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 211120 판결)
3. 해 설	1. 사건개요
III. 의결권 구속약정의 효력과 의무불이행에 따른 간접강제(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2. 대법원 판결요지
1. 사건개요	3. 해 설
2. 대법원 판결요지	VI.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는 영업양도의 효력과 주주구제(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19다 236385 판결).
3. 해 설	1. 사건개요
IV. 이사의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손익상계제한과 책임제한(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021다 256702 판결)	2. 소송의 경과
	3. 대법원 판결요지
	4. 해 설
	VII. 맺는말

I. 머리말

이 글은 필자가 2025년 1월부터 동년 12월까지 대법원 법원도서관에서 매월 격주로 발간되

2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113호 (2026.1.)

는 ‘판례공보’에 게재된 대법원 판례 중 회사법 관련 중요판례를 선정하여 판례선고일 순서에 따라 설명한 것이다. 2025년에는 회사법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없었다.

이하에서 소개되는 2025년 회사법 관련 판례는 아래의 총 5건이다. ① 주주권 유보부 주식양도예약에 있어 실질주주명부의 효력과 신주발행의 효력(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 판결), ② 의결권 구속약정의 효력과 의무불이행에 따른 간접강제(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③ 이사의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손익상계제한과 책임제한(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021다256702 판결), ④ 공동상속 주식의 준공유 관계와 주주지위 확인의 소(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⑤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는 영업양도의 효력과 주주구제(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19다236385 판결).

II. 주주권 유보부 주식양도예약에 있어 실질주주명부의 효력과 신주발행의 효력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 판결)

1. 사건개요

제1심 판결¹⁾ 및 제2심인 원심판결²⁾에서 나타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당사자와 주식매매예약

원고(甲)는 2018. 2. 27.부터 2018. 7.18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丙)과 피고 발행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투자자이다. 원고는 2019. 12. 20.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0. 2. 24. 해임되었다. 피고(乙) 회사는 무선 전력전송 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주식매매예약’의 주요내용은 ① 소외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의 담보로 매매예정 주식수 상당의 주권을 예치하고, 원고는 소외인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돈을 예치한다(제2조 제1항). ② 피고의 총 발행주식 수가 4,000만 주가 되었을 때 또는 피고의 사정으로 기업공개(IPO) 이전에 유상증자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는 때 이 사건 매매예약은 완결되며,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 확정적으로 주식이 매매된다(제3조 제1항). ③ 이 사건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즉시 상호 예치된 주식 및 돈은 각 예치받은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매매를 종결한다(제3조 제2항). ④ 원고는 예치받은 주식에 대한 권리(의결권, 배당권 등 일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5. 13. 선고 2020가합104069 판결

2) 수원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1나16092 판결

체의 권리)가 매매예약이 완결되기 이전까지는 소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소외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제4조 제2항).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았고, 피고의 명의개서대리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실질주주명부에는 원고가 피고 발행주식 10만 주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당시 피고의 실질주주명부에는 원고 외에도 1,500명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 반면 피고가 직접 작성관리했다고 주장하는 주주명부에는 소외인 외 9명이 주주이고, 그중 소외인이 18,161,060주, 지분을 89.91%를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2020. 3. 7. 주식회사 △△△에 차용금 채무와의 상계를 위하여 30만 주, 자금조달을 위하여 396만 주 합계 426만 주를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나.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20. 3. 7. 보통주식 426만 주를 발행(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하면서, ① 상법 제416조의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②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에 따른 신주인수권 배정일 공고 및 청약 최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③ 현저히 불공정한 가격으로 발행하였다. 특히 피고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회사 내부 명부상 주주인 소외인 등 소수의 동의만 받아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상법 제429조에 따르면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만이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설령 명의개서가 되었더라도, 원고와 소외인 간의 주식매매예약서에 "예약 완결 전까지의 결권 등 일체의 권리는 소외인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항변하였다.

본안에 대한 항변으로 피고는 원고의 주주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① 신주발행에 대하여 2020년 3월 6일자 이사회 의사록이 존재하므로 결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② 회사는 내부 주주명부상 주주를 진정한 주주로 파악하여 그들의 동의를 얻어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③ 원고는 계약상 권리를 소외인에게 유보했으므로, 회사가 원고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④ 신주 발행가격이 다소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신주발행 과정에 하자가

없으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라. 소송의 경과

(1) 제1심 판결

제1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만이 제기할 수 있다.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야 하며,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가 권리를 행사하려면,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적법한 주주명부에 기재되었다거나 명의개서를 마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자격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제2심 판결(원심, 항소심)

제1심은 피고(회사)는 원고가 주주가 아니므로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다음과 같이 원고의 당사자 자격(주주 지위)을 인정하였다.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³⁾ 피고의 정관에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도록 정하였고 2017. 2. 28. 주식회사 G을 피고의 명의개서대리인으로 등기한 사실, 주식회사 G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원고가 2019. 12. 31. 기준 피고 주식 100,000주를 보유했다고 회신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원고는 명의개서를 마친 주주로서 피고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사후에 이를 무효로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할 때, 그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

3) 대법원 2020. 6. 11.자 2020마5263 결정,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을 미치는 경우로서 신주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다.⁴⁾

이 사건에서 ① 피고가 2020년 3월 6일 이사회를 열어 채무상계 및 자금조달을 위한 신주발행을 결의한 사실이 의사록(을 제4호증)을 통해 인정되므로, 결의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② 원고와 소외인 간 매매약서에 “유상증자를 통하여 피고의 총 발행주식수가 4,000만주가 될 경우 매매약이 완결되는 것으로 정한 것은 원고가 4,000만 주 발행 시까지는 스스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신주발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있어서 무효원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신주의 인수인이 회사의 지배주주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거나 그 발행가액이 시가 등에 비추어 다소 낮은 가격이라는 것과 같은 사유는 이미 발행된 주식을 무효화할 만한 원인이 되지 못한다.⁵⁾ 따라서 이 사건 신주발행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의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 판결요지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주명부기재의 효력과 실질주주명부상 주주의 지위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비치하는 ‘실질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명부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자본시장법 제216조 제2항),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 행사의 주체가 된다.⁶⁾ 따라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주

4)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65860 판결 등 참조.

5)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등 참조.

6)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6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113호 (2026.1.)

주에 대한 통지·공고 절차를 이행했는지, 신주발행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오직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 사적 약정의 회사에 대한 효력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이 완결되기 전까지 원고 명의로 된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소외인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이 체결되었고, 그 매매예약이 이 사건 신주발행 때까지 완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원고에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하고 그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발행에 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피고의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1,500명을 초과하는 나머지 주주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개인법적 법률관계인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소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소외인의 의사에 구속되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국면을 달리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회사인 피고가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누락하거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원고를 비롯한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원고 명의로 된 주식에 관한 권리가 소외인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신주발행에 관한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주인수권 행사 주체와 신주발행무효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아울러 상법상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배정 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그 방식에 따라 신주발행의 요건과 절차 등이 달라지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도 이 사건 신주배정이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 방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따라 신주발행의 요건을 충족하고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

3. 해 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주명부의 기재의 효력에 관한 종전의 입장을 바탕으로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적 약정의 회사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적 약정이 공식적인 실질주주명부와 ‘회사 내부 주주명부’간의 불일치에 따른 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과 실질주주명부

주주명부의 기재의 효력에 대하여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상법 337조 1항에서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주식양수인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회사가 실질적 권리관계를 입증하여 명의개서 미필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편면적 구속설)을 변경하는 획기적인 판결이었다.

이와 같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에게만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판결은 비상장법인 등에서 경영진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관리하거나 이중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법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작성된 객관적인 (실질)주주명부가 주주권 행사의 유일한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주주권 관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다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적 선언이다.

나. 주주권 유보 양도계약과 회사에 영향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주 간의 권리 유보 계약’이 ‘회사의 법적 절차 이행 의무’를 면제시키는가 하는 점이었다. 대법원은 이를 엄격히 분리하였다. 주주끼리 “의결권은 내가 행사해”라고 약속했더라도, 회사는 정식의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에게 적법한 통지를 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특정 주주 간의 이면 계약을 핑계로 공식 주주들에 대한 통지를 누락하고, 경영진 입맛에 맞는 소수 주주만으로 증자를 강행한다면, 이는 회사법의 근간인 단체법적 원리와 절차적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주식양도에 있어서 주주권행사에 관한 별도의 사적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계약 문제일 뿐이다. 본 판결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만을 주주권 행사자로 인정하는 위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재확인함으로써 주주권행사에 관한 통일성, 명확성, 확실성을 제고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Ⅲ. 의결권 구속약정의 효력과 의무불이행에 따른 간접강제(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1. 사건개요

제1심 판결⁷⁾ 및 제2심인 원심판결에서⁸⁾ 나타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당사자 및 계약의 체결

원고(A)와 피고(B 유한공사) 및 소외 K사는 2016. 10. 16.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C 주식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와 K사는 홍콩에서 설립된 기업이다. 해당 계약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구성은 총 4인으로 하되, 원고 측과 피고 측(피고 및 K사)이 각각 2인을 지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양측은 각 1인의 이사를 추천하여 공동대표 이사를 선임하기로 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상호 합의하에 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

그러나 피고는 2018. 8. 6.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정원에 관한 기존 합작투자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피고 측 인사인 3인의 이사(G, H, F)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위 안건이 가결되었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합작투자계약상 이 사건 회사의 이사 수를 4인(피고 측 추천 2인)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3인의 이사를 추가 선임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의무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측이 추천하여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을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당시 사내이사 추가 선임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사회의 구성은 4인으로 하고 양측이 각 2인을 지정한다"는 합작투자계약 내용은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가합558397 판결.

8) 서울고등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2035276 판결.

회사의 설립 당시에만 적용되는 약정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회사 설립이 완료된 이후에도 피고가 이사의 수를 4인으로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수를 확정된 숫자가 아닌 3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합작투자계약이 4인으로 정했더라도, 정관상으로는 주주들의 합의나 다수결에 따라 이사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55%)을 가진 피고의 결정에 따라 이사 수를 늘리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의 법리적 주장 외에도, 실제 주주총회 현장에서 원고가 이사 증원에 동의했으므로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위를 근거로 자신에게 이사 해임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 명령 또한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다투었다.

라. 소송의 경과

제1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① 피고는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이사를 4인으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3인의 이사를 추가 선임한 후 절차상 하자 있는 이사회를 열어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려 하였는데, 이는 합작투자계약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 의무의 위반 상황을 신속히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의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판결의 확정 이후에도 이 사건 의무를 불이행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 의무 불이행시 일정한 배상을 명하도록 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이사 3인의 해임 안전에 찬성하는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리면서, 이러한 피고의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의 법리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하여는 통상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신청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 언제나 위와 같이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하여야만 비로소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집행권원의 성립과 강제집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동안에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충분한 손해전보가 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집행제도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

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⁹⁾”

피고만 항소한 제2심 법원에서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 판결요지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의 주요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위반시의 구제 수단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의결권구속약정, 즉 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은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의결권구속 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의결권구속약정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된 경우 약정의 다른 당사자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룰 수 없고, 다만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조항은 주주 사이의 계약으로 이사의 총원이나 이사 선임권 등 회사 정관으로 규정되어야 할 회사 기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러한 상태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한 의결권구속약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피고는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구성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된 경우 이 사건 조항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가 위와 같이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추가로 3인의 이사가 선임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이사의 총원과 구성에 반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측이 추천하여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의 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9)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참조.

나. 의사표시 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는 채무자에게 부대체적 작위채무 또는 부작위채무 등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제재를 예고하는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집행방법이다.¹⁰⁾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여기서 “상당한 이행기간”이란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이행의무가 있음을 고지받은 때부터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원은 이행의무의 내용, 이행의 용이성 등을 비롯하여 앞서 본 간접강제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 나아가 강제명령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서¹¹⁾ 법원은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특성이나 자력, 채무의 성질과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이행의 난이도, 채무자의 태도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채무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위반행위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와 그 피해회복의 곤란성 등을 고려하여 배상금을 정할 수 있다.

3. 해 설

이번 판결은 주주 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의 법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¹²⁾

가. 의결권 구속약정의 유효성과 한계

의결권 구속약정은 복수의 주주가 특정 또는 모든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공동

10)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1)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등 참조.

12) 이 판결을 다룬 논문은 박 경, “주주 간 의결권구속약정의 이행강제에 관한 연구”, 인한대학교 「법학연구」, 243-275면, 2025.9. 그밖에 주주 간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에 관한 국내문헌으로는,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제9판)」, 박영사, 2025; 천경훈, “주주 간 계약의 실태와 법리”, 「상사판례연구」 제26권 제3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13, 3-44면; 이철송, “주주 간 계약의 회사법적 효력론의 동향”, 「선진상사법률연구」 제86호, 법무부, 2019, 1-31면; 이준기, “기관구성에 관한 주주 간 계약의 주주에 대한 효과와 이사에 대한 효과”, 「홍익법학」 제26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이동건/류명현/이수균, “M&A계약의 주요 조항과 법적 쟁점 1”, 「BFL」 제67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4, 77-101면; 최승재, “주주 간 계약의 회사법상 효력에 대한 계약유형별 쟁점”, 「증권법연구」 제26권제1호(통권 제65호), 한국증권법학회, 2025; 최문희, “이사회 의사결정에 관한 주주 간 계약의 논점”, 「증권법연구」 제25권 제3호(통권 제64호), 한국증권법학회, 2024. 등 참조.

또는 일정한 방향으로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¹³⁾ 행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타인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합의의 내용에 따른 구속이 수반되므로 통칭하여 ‘의결권 구속약정’으로 칭할 뿐이다. 따라서 ‘의결권 구속약정’은 의결권의 적극적 행사 뿐만 아니라, 불행사, 포기, 분산행사, 행사전 합의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의결권 구속 약정은 주주간 계약의 일종이다.

대법원은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지만(채권적 효력),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¹⁴⁾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약정을 어기고, 이사 증원에 대한 찬성표를 던져 결의가 통과되었더라도, 그 결의 자체는 유효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의 온전한 주주 간 계약에 따른 합의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대법원은 약정 위반자가 그 위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이 사건에서는 해임 찬성표 행사)를 긍정함으로써 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이는 주주 간 의결권구속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원상회복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부대체적 작위채무로서의 의결권 행사와 간접강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의 강제는 채무자(주주) 본인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해당한다. 채무자 본인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회사법의 영역에 있어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른 금전배상에 의한 간접강제가 채무자의 부대체적 작위채무(이 사건의 경우 이사해임에 대한 찬성의 의사표시) 불이행에 대해 심리적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적법한 집행 방법임을 확인한 것이다.

본 사건과 같이 부대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특히, 단순히 작위의무를 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강력한 이행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특성이나 자력, 채무의 성질과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이행의 난이도, 채무자의 태도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채무자가 얻을

13) 정경영, 「회사법학」, 박영사, 2022, 474-475면; 박 경, 상계논문, 249면.

14) 이러한 기본적 입장은 주식양도제한에 관한 주주 간 협약의 효력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동지: 대법원 2000. 0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대법원 2008. 0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위반행위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와 그 피해 회복의 곤란성 등을 고려하여 배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원심이 명한 1일 100만 원의 배상금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본 판결은 합작투자계약 등에서 경영권 방어나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 체결된 의결권 구속약정이 단순한 신사협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의결권구속약정의 유효화, 의결권 구속약정을 제한하는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의 의미와 구체적인 범위, 배상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 등은 향후 해결하여야 과제이다.

IV. 이사의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손익상계제한과 책임제한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021다256702 판결)

1. 사건개요

제1심 판결¹⁵⁾ 및 제2심인 원심판결¹⁶⁾에서 나타난 주요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당사자

소외 1 회사(대상회사)는 1989년 설립되어 휴대용 부탄가스 및 에어졸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소외 2 회사(관계회사)는 1985년 설립되어 소외 1 회사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피고는 소외 1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일시 퇴임 기간 제외)하였으며, 2000년경부터는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피고는 소외 2 회사의 지배주주(91.12%)이며, 소외 1 회사의 주요 주주(23.57%)이다.

원고들(주주들)은 소외 1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로서,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는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쟁업체들과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 10. 선고 2019가합101086, 2019가합103006 판결.

16) 대전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11603 판결.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하였고, 이로 인해 소외 1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59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형사재판에서 1억 5,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동종 영업을 하는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소외 1 회사의 판매지역과 소외 2 회사의 판매지역을 분할하는 등 경업금지의무 및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소외 1 회사는 과징금과 벌금 액수를 초과하는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증가의 이득을 얻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러한 이득을 공제(손익상계)하면 피고가 배상할 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담합을 통해 회사가 얻은 이익이 추후 납부한 과징금 및 벌금 액수보다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는 회사에 발생한 손해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주주들)에게 있다고 지적하며, 원고들이 실질적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항변하였다.

또한 피고는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는 법적으로는 별개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서 영업부문을 달리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이므로 상호 경쟁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경업금지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두 회사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두 회사는 인사, 재무, 통합구매 등 공통의 지원부서를 두고 있으며, 동일한 상표('썬연료' 등)를 사용하는 등 시장에서 하나의 그룹(AC그룹/AB 그룹)으로 인식되므로 이익충돌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두 회사는 상호 부품을 공급하고 협력하는 관계로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되므로, 피고가 이사회의 별도 승인 없이 관계회사의 대표를 겸직했다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라. 소송의 경과

제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피고의 가격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되, 피고가 주장한 이익 공제(손익상계)는 배척하고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하였다. 반면, 경업금지의무와 충실의무 등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우선 가격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가격담합행위를 주도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가 과징금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399조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피고가 담합으로 가격을 인상하여 회사가 얻은 이익(영업이익 등)이 과징금 액수보다 크므로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 전액(159억 6,000만 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다. 그 근거는 ① 회사가 과징금을 납부하게 된 것은 가격 담합이 없었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이므로 확정적인 손해이며, ② 영업이익의 증가는 담합 행위 자체의 결과이지만, 과징금은 국가의 제재 조치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성격이 다르므로 영업이익의 증가가 과징금 손해를 직접 메워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매출이나 이익 변동에는 가격 외에도 경제 상황, 원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므로, 오직 담합으로 인한 이익만을 구체적으로 발라내어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피고가 개인적 이익보다는 회사의 경영수지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행위를 한 점, 담합 직전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 환경이 어려웠던 점, 피고가 회사 설립 후 성장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을 위해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하였다.

또한 법원은 두 회사가 법적으로는 별개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기업(경제적 동일체)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두 회사는 지배주주(피고)가 동일하고, 인사·재무 등 지원부서를 공유하며,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시장에서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된다. 또한 상호 제품을 교차 공급하는 협력 관계에 있어 이익충돌의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의 겸직이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항소심인 원심은 제1심과 결론을 같이하면서도 손해액의 범위를 일부 확장하였다. 원심은 과징금뿐만 아니라 형사재판 벌금(1억 5,000만 원)도 손해로 인정하였다. 특히 피고의 '손익상계'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과징금 및 벌금 상당액의 손해는 가격담합행위 자체로 직접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라 국가의 행정처분 및 형벌권 행사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담합으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와는 성격을 달리하여 직접 전보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설령 이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행위 억제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약 96억 6,600만 원의 배상 책임(책임제한 60% 적용)을 인정하였다.

피고의 경업금지위반, 충실의무위반 등에 대하여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대법원 판결요지

대법원은 피고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주요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겸직 관련)

어떤 회사가 이사가 속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고 있다면 그 당시 서로 영업지역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두 회사의 지분소유 상황과 지배구조, 영업형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나 상표의 사용 여부, 시장에서 두 회사가 경쟁자로 인식되는지 여부 등 거래 전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업 대상 여부가 문제 되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사가 속한 회사의 지점 내지 영업부류으로 운영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다면 두 회사 사이에는 서로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¹⁷⁾

따라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소외 1 회사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소외 2 회사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영업부문을 달리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을 뿐 상호 경쟁자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이사회 승인 없이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소외 2 회사의 지배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 경업금지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법행위로 인한 이득의 손익상계 허용 여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등이 피해자에게 손해와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한다.¹⁸⁾ 손해배상액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¹⁹⁾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²⁰⁾

그러나 회사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²¹⁾ 이사가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법원이 승인하는 셈이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해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사의 법령 위반과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게 된다. 이는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로 인해 소외 1 회사에 설령 어떠한 이득(영업이익 증가 등)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이득을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과징금 및 벌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17)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등 참조.

18)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등 참조.

19)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

20)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등 참조.

2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참조.

다. 책임제한의 법리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 위반의 경위 및 임무 위반 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에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²²⁾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해 설

이 판결은 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회사에 과징금 등의 손해가 발생했으나 동시에 위법행위로 인한 수익도 발생한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법리를 밝히고 있다.

가. 위법한 이득의 손익상계 배제 법리

우리 대법원은 손해배상 산정 시 '손익상계(이득공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만, 그 이득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둔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담합으로 가격을 인상해 회사가 돈을 벌었으니, 나중에 낸 과징금보다 번 돈이 많으면 손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는 경제적 관점에서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이다.

대법원은 "회사는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명제를 전제로, 위법행위로 얻은 이득을 손해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은 법원이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승인하고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범죄적 수단(가격담합)을 통해 얻은 수익은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고려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이사의 책임을 감경해 주어서는 안 된

22)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82220 판결 등 참조.

다는 규범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했다는 항변을 차단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준법성을 강조한 판결로 해석된다.

나. 실질적 단일체 법리와 경업금지

한편, 피고가 별도 법인인 소외 2 회사의 대표를 겸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였다. 비록 별개의 법인이지만 지배주주가 동일하고, 업무 지원부서를 공유하며, 상호 보완적인 영업(지역 분할 등)을 해온 경우,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자' 내지 '지점'과 같은 관계라고 보았다. 이 경우 두 회사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이므로, 이사가 양쪽 회사를 경영하더라도 '이해상충'이나 '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계열사 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존재하는 기업집단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경업금지의 무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대법원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주주대표소송에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때, ① 회사가 불법행위로 얻은 반사이익은 경영진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경영진의 준법 감시 의무를 강화하였고, ② 계열사 간 겸직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이해충돌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담합 행위 등의 경우, 회사가 그로 인해 얻은 단기적 수익을 이유로 경영진의 배상 책임을 줄일 수 없다는 점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V. 공동상속 주식의 준공유 관계와 주주지위 확인의 소(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1. 사건개요

제1심과²³⁾ 제2심인 원심에서²⁴⁾ 나타난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당사자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598043 판결

24) 서울고등법원 2025. 2. 19. 선고 2023나2006442 판결

원고는 2019. 8. 24. 사망한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혼외자로서 인지된 법적 자녀이다. 피고 회사는 교육 관련 자문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분쟁의 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이다. 공동 피고(D, E)는 망인의 다른 자녀들로서 원고와 함께 공동상속인이다. 피고 D, E는 원고와 이복형제 지간이며, 이들은 망인의 사망 후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나. 사실관계

망인은 1976년 H와 결혼하여 피고 D, E를 두었으나, I와의 사이에서 원고를 낳았고 2016년 원고를 인지하였다. H는 2016년 4월 망인과 I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년 7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이 확정되었다. 이때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H가 보유한 피고 회사 주식(244,800주)이 망인에게 양도되었다.

망인은 2019년 8월 24일, 원고의 생모 I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3일 뒤인 8월 27일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주주명부상 망인은 705,600주(지분율 49%)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20년 2월경 피고 D, E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요청했으나, 피고들은 해당 주식은 이 사건의 쟁점이 된 다음의 처분문서 약정에 따라 이미 피고 E에게 귀속되었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측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망인이 이혼 무렵인 2016년 9월경 '주식전환확인서', '동의서', '이행확약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이 문서들에는 "이혼의 원인이 된 사람들(원고 모자)로 인해 회사의 이익을 해하거나 불의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망인의 주식은 액면가로 피고 E에게 자동 귀속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고를 포함한 공유자들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예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공유주주임을 확인받고자 한다.

라.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이 생전 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주식전환확인서, 동의서 등의 처분문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의 사망 전 또는 사망과 동시에 피고 E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피

고들은 이 문서들에 의하면 '이혼의 원인이 된 사람들과 그 가족 등으로 인해 회사의 운영과 주주의 이익을 해할 경우' 주식 소유권이 피고 E에게 자동 이전되기로 약정되었으며, 망인의 사망 사고와 원고 측의 행동이 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마. 소송의 경과

제1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단순히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원고에게 있어 분쟁 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피고 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다. 다만, 위 처분문서들의 진정성을 부정하여 원고의 다른 공동상속인들(피고 D, E 등)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여 원고가 주주임을 확인하였다.

제2심 법원은 상세하게 피고들이 제출한 처분문서들의 인영이 망인의 인감도장을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임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인 전원을 위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피고들)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으나, 피고 회사가 원고의 주주권을 부인하며 명의개서에 응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고, 원고 단독으로는 이행 청구(명의개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 지위(공유 주주)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2. 대법원 판결요지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의 주요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상속주식의 법적 성질과 공유관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²⁵⁾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

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²⁶⁾ 따라서 공동으로 주식을 상속한 수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주식을 공유하게 되고, 상속인들 명의로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주식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공유상태 명의개서 청구의 한계

상법 제333조 제2항은 공유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 1인의 권리행사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주식에 관하여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행위 자체는 위 조항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1인의 권리행사자가 정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식의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명의개서 없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고,²⁷⁾ 수인이 주식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야 한다(상법 제352조). 따라서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희망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를 희망하는 일부 공유자들의 의사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상법 제352조에 따라 주주명부에는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다른 공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 공유주주 지위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²⁸⁾ 그러나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는 등으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을 공유하는 수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독립한 소유권과 같아 공유자는 그 지분을 부인하는 제3자에 대하여 각자 그 지분권을 주장하여 지분의 확인을 소구함이 원칙이고,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타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

25)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등 참조.

26)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등 참조.

27)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 판결 참조.

28)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확인을 구하는 소에 대하여 그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 확인도 이를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유자 일부만이 그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²⁹⁾ 따라서 주식을 공유하는 다른 공유자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을 공유하는 수인 중 일부 주주는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해 설

이 사건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혼외자(원고)와 전처 소생 자녀들(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경영권 및 상속재산 분쟁이다. 판결은 공동상속인 간의 분쟁으로 인해 주식의 귀속이 다투어지고, 회사가 특정 상속인의 주주 지위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소수지분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상속 주식의 준공유 관계 확인

대법원은 주식이 가분채권과 달리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전까지는 공동상속인들의 '준공유' 상태에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주식은 공유관계가 성립하며, 명의개서 여부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주식 취득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나. 명의개서 청구의 현실적 한계와 법리

통상적으로 주주는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단순히 지위를 확인하는 '확인'의 소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확인'의 이익 부정). 그러나 공동상속 주식의 경우, 상법상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다른 상속인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원고 혼자서 전원의 명의개서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딜레마가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여, 일부 공유자가 반대하여 명의개서 이행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행불능에 준하는 상태)에서는 예외적으로 '주주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이 권리구제를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임을 인정하였다.

29)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참조.

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경영권 분쟁이나 상속 분쟁이 발생하여 회사가 특정 상속인을 배제하려 하거나 다른 상속인들이 명의개서에 비협조적인 경우, 소수지분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회사에 대하여 '공유지분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즉, 이행의 소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확인의 소의 보충성 원칙에 대한 예외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VI.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는 영업양도의 효력과 주주구제(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19다236385 판결).

1. 사건개요

제1심 판결³⁰⁾ 및 제2심인 원심판결³¹⁾에서 나타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은 회사가 주식양도의 방법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주요 사업 부문을 매각한 후, 이에 반발하는 소수주주들이 구제를 받기 위해 벌인 선행 소송(영업양도 무효 확인)과 '본안 소송(주주 제안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으로 이어지는 긴 법적 분쟁이다.

가. 당사자

피고 회사는 신발류 및 신발부품류의 제조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고, 피고 2는 대표이사, 피고 3은 사내이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약 5.42%를 보유한 소수주주들이다. 피고 회사는 자회사인 중국 법인과 캄보디아 법인을 통해 자전거용 신발을 제조하여 소외 회사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2007년 합병 전 계약 및 2010년-2011년경 주식 양도 계약을 통해 위 자회사들의 주식 전부를 소외 회사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주식 양도'). 이로 인해 피고 회사의 자전거용 신발 제조사업은 2010년 말경 사실상 종료되었다.

나.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양도한 것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가합5677, 2016가합560075 판결

31) 서울고등법원 2019. 5. 2. 선고 2017나2027639 판결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선행소송을 통해 '이 사건 각 주식 양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어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원고들은 무효인 주식 양도를 주주총회에서 추인(사후 승인)하는 결의를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주주제안을 하였으나, 피고 이사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제안을 거부하고 추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은 반대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투자자본을 회수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라면 받을 수 있었던 주식매수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주식 양도는 영업양도가 아니므로 특별결의가 불필요하거나,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이를 추인하거나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 또한 원고들의 주주제안은 오로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이거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소송의 경과

가. 선행판결

원고들(소수주주)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의 주식양도는 실질적으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것에 해당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양도는 무효이므로, 유효한 영업양도를 전제로 하는 주식매수청구권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들은 영업양도가 '무효'라는 확인만 받고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선행사건이 확정되었다.

나. 제1심 판결

선행사건 이후, 원고들은 "무효인 영업양도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추인하여 유효하게 만든 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주주제안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다시 소를 제기했다. 원고들의 의도는 무효인 행위가 주주총회 결의로 '유효'하게 추인되면, 반대주주로서 적법하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회사를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피

고들은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선행판결과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선행사건의 변론종결 이후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배척되었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의 주식양도는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같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 회사의 자전거용 신발 제조사업(중계무역업)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무효인 영업양도를 추진하거나 원상회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원고들의 적법한 주주제안을 거부한 것은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식가액 산정 방식이 타당하지 않고, 법원의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체적인 손해액(주식가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제2심 판결(원심, 항소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주주제안을 거부하고 추진 결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사의 임무 위배 행위이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반대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투자자분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다. 손해배상액은 불법행위 시점인 2016. 3. 22.(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주식가치의 평가에 대하여는 여러 평가방법을 자세히 검토한 후, 피고 회사의 영업이 중단되어 미래 수익을 추정하는 '현금흐름할인법(수익가치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순자산가치 방식(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였다.

3. 대법원 판결요지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주식양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란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영업 재산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양도로 인해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양도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³²⁾ 이 사건 주식 양도로 피고 회사의 자전거 신발 제조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특별결의 대상이다.

나. 정당한 주주제안의 거부와 불법행위 성립

주주가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주주제안을 한 경우, 이사는 법령·정관 위반 등 예외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삼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안한 '무효인 주식 양도의 추인' 안건은 상법 시행령이 정한 '주주 개인의 고충'이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록 그 목적이 반대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사들이 이를 거부하고 추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임무 위배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또는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³³⁾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주주에 불과한 원고들은 직접 피고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없고, 다만 주주총회결의를 통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피고 회사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³⁴⁾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이 직접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이 사건 각 주식 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주식 양도의 추인 결의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하는 이 사건 주주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들이 정기주주총회 의제로 상정하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등 무효인 위 각 주식 양도를 추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의 주주제안을 거부하여, 원고들은 그 추인결의가 이루어졌더라면 반대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었던 주식매수

32)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등 참조.

33)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 등 참조.

34) 대법원 2001. 2. 28. 자 2000마7839 결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 등 참조.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주식매수가액 상당의 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210조에 따라 대표이사인 피고 2와 공동하여 피고 2의 위법한 업무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배상액 산정 기준 및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액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³⁵⁾ 따라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인 2016. 3. 22.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매수가액 상당이다.

이때의 지연손해금(이자)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상사법정이율(연 6%)이 아닌 민사법정이율(연 5%)이 적용된다.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³⁶⁾

또한, 원고들 소유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므로, 피고들은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주권인도 등의 절차 이행 없이도 민법 제399조, 제763조에 기하여 원고들 보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당연히 취득한다(배상자 대위).

4. 해 설

이 판결은 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중요한 영업 자산을 양도하여 반대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주주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제 수단을 명확히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가. '무효인 영업양도'와 반대주주의 딜레마 해결

상법상 회사가 영업양도를 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주식을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주식매수청구권). 그러나 회사가 이 절차를 무시하고 영업양도를 강행할 경우, 법적으로 그 양도는 '무효'가 된다. 과거의 딜레마는 여기서 발생했다. 영업양도가 '무효'라면 법리적으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35)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제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6)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등 참조.

(선행사건의 판결). 결국 회사의 위법한 행위로 주주는 탈출 기회(투자금 회수)를 잃고 껍데기만 남은 회사에 간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는 법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즉, 회사는 무효인 영업양도를 사후에라도 주주총회를 열어 유효하게 추인할 의무가 있고, 주주들은 이를 안건으로 주주제안을 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사들이 이를 거부하여 주주들이 '회사를 떠날 기회(주식매수청구권)'를 영영 잃게 만들었다면, 그것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주식 가치)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법정이율

이번 판결은 손해액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라면 받을 수 있었던 주식매수가액'으로 보고, 그 산정 기준일을 불법행위일(거부된 주주총회일)로 정하였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거래 가격이 없다면 순자산가치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통해 가액을 산정한다. 주목할 점은 지연손해금의 이율이다.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한 주식매수대금 지급 의무는 본래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 상사이율(6%)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 보아 민사이율(5%)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판결의 의의

대법원 판결은 회사의 사업부문을 우회적으로 주식 양도 등의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영업이 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영진이 부당한 이유로 정당한 주주제안을 함부로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주주의 권리 행사 기회를 박탈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미 위법하게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주주들이 '무효인 행위의 추인'이라는 안건을 제안함으로써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이를 방해한 경영진에게 금전적 배상 책임을 물어 소수주주를 사후적 구제하는 수단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절차적 위법을 저지른 회사가 오히려 그 위법을 핑계로 주주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태에 제동을 건 것으로, 소수주주권 보호를 한층 강화한 판결로 평가된다.

VII. 맺는말

이상에서 2025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였다. 소개된 판례는 법원도서관에서 공

식적으로 매월 격주로 발간되는 ‘판례공보’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지만 ‘판례공보’에 게재되지 않아 소개되지 않은 판례도 있을 수 있다.

지난 2025년에는 회사법 개정이 떠들썩하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회사법 관련 판례의 건수는 종전보다 다소 줄어 들었고, 개별 판례의 쟁점이 많지 않아 살아있는 법으로서의 판례의 움직임이 안정기에 들어섰다는 느낌이 든다.³⁷⁾ 2025년 판례들을 하나씩 요약·정리하고, 2026년에도 의미 있는 좋은 판례가 나올 것을 기대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① 주주권 유보부 주식양도예약에 있어 실질주주명부의 효력과 신주발행의 효력(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 판결)에서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주주권 유보부 약정을 이유로 원고의 신주발행에 관한 무효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신주인수권 행사 주체와 신주발행무효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고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하였다.

② 의결권 구속약정의 효력과 의무불이행에 따른 간접강제(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에서는 “의결권구속약정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된 경우 약정의 다른 당사자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룰 수 없고, 다만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고 판시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약정 위반자에 대하여 부대체적 작위의무인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이 사건에서는 ‘해임 찬성표 행사’)를 요구할 권리를 긍정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로서 금전배상을 인정하였다.

③ 이사의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손익상계제한과 책임제한(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021다256702 판결)에서는 “회사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사가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는 동시에 이사가 법령위반행위로 인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도 책임제한을 긍정하였다.

④ 공동상속 주식의 준공유 관계와 주주지위 확인의 소(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에서는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러나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는 등으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여 명의개서 이행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예

37) 참고, “최근 대법원 회사법 판례의 동향과 과제”, 「상사판례연구」 제36권 제1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23. 3. 3-70면 참조.

외적으로 '주주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이 권리구제를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임을 인정하였다.

⑤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는 영업양도의 효력과 주주구제(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19다 236385 판결)에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어 무효인 영업양도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무효를 추인하는 주주제안을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들의 주주제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대표이사는 추인결의가 이루어졌더라면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얻을 주식매수가액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이 경우 배상액은 주주제안이 거절된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매수가액 상당이며, 이때의 지연손해금(이자)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민사법정이율(연 5%)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